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9. 09. 이해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 9.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9. 1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해식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

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생략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9.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 조회·회보 기관에 공소청의 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지청을 공소청으로 수정하고(안 제49조제10항), 부칙에 국외선거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제218조의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부칙 제2조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9조제10항 후단 중 앞의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뒤의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안 제218조의3제5항 중 “사법경찰관의 진술 청취”를 “사법경찰관의 진술 청취의”로, “검사는”을 “검사의 의견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으로 한다.

안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국외선거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제21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 구를 관할하는 <u>검찰</u> <u>청</u> 의 장에게 그 후보 자의 전과기록을 조 회할 수 있고, 당해 <u>검찰청</u> 의 장은 그 전 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 ----- ----- <u>지방</u> <u>공소청 및 지방공소</u> <u>청 지청</u> ----- ----- ----- ----- <u>지방공소청 및</u> <u>지방공소청 지청</u> ----- ----- ----- -----.	----- ----- ----- <u>공소청</u> (<u>광역공소청, 지방공</u> <u>소청 및 지방공소청</u> <u>지청을 포함한다. 이</u> <u>하 같다</u>)----- ----- ----- ----- ----- ----- -----.
⑪ ~ ⑮ (생략)	⑪ ~ ⑮ (현행과 같음)	⑪ ~ ⑮ (개정안과 같음)
제218조의33(국외선거 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 <u>형사소송법</u> 」 제 200조, 제22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 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 자 아닌 자를 상대	제218조의33(국외선거 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① --- ----- 「 <u>형사소송법</u> 」 제 200조, 제221조, <u>제245조의13</u> ----- ----- ----- -----	제218조의33(국외선거 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① (개 정안과 같음)

로 인터넷 화상장 치를 이용하여 <u>진</u> <u>술</u> 을 들을 수 있다.	----- ----- <u>의</u> <u>견 또는 진술</u> ----	
	--.	
② 제1항에 따라 <u>진술</u> 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할 사 건에 관하여 통보 하여야 하고, <u>진술</u> 을 들을 때에는 영 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 <u>의견 또는 진술</u> --- ----- ----- ----- ----- ----- ----- <u>의견</u> <u>또는 진술</u> ----- -----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u>검사 또는 사법</u> <u>경찰관</u> 은 제1항에 따라 <u>진술</u> 을 들을 경우 그 <u>진술</u> 내용 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자 의 경우에는 동의	③ <u>사법경찰관</u> ---- ----- ----- ----- ----- ----- ----- ----- -----.	③ (개정안과 같음)

를 받아야 영상녹 화할 수 있다.	----- -----.	
④ <u>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u> 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 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	④ <u>사법경찰관</u> ----- ----- ----- -----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u>진술 청취의 절차</u> 및 방식에 관하여 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제243조의2부터 제 245조까지를 <u>준용</u> <u>한다</u> .	⑤ ----- <u>사법경찰관의 진술</u> <u>청취</u> ----- ----- ----- ----- <u>준용</u> <u>하고, 검사는 같은</u> <u>법 제245조의13을</u> <u>준용한다</u> .	⑤ ----- <u>사법경찰관의 진술</u> <u>청취의</u> ----- ----- ----- ----- <u>준용</u> <u>하고, 검사의 의견</u> <u>청취의 절차 및 방</u> <u>식에 관하여는 같</u> <u>은 법 제245조의13</u> <u>을 준용한다</u> .
⑥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u>검사 또는 사법경</u> <u>찰관</u> 에게 송부하여	⑥ ----- ----- ----- <u>사법경찰관</u> ----- -----	⑥ ----- ----- ----- <u>사법경찰관</u> ----- -----

야 한다.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⑦ ----- ----- ----- ---- <u>사법경찰관</u> ----- ----- ----- ----.	⑦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u>제1조(시행일)</u>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u>제2조(국외선거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 조사에 관한 경과 조치)</u>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제218조의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0항 후단 중 앞의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뒤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47조제9항제1호 단서 중 “검찰사무·마약수사”를 “형사법무”로 한다.
제218조의3제1항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를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245조의13”으로, “진술”을 “의견 또는 진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술”을 각각 “의견 또는 진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진술 청취”를 “사법경찰관의 진술 청취”로,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검사의 의견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5조의13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각각 “사법경찰관”으로 한다.

제223조제4항 중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관할 광역공소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선거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제218조의3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⑨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u>검찰청의</u>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u>검찰청의</u>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⑩ ----- ----- ----- ----- ----- ----- ----- ----- ----- ----- ----- ----- ----- ----- ----- ----- <u>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u>공소청</u> -- -----

⑪ ~ ⑮ (생략)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⑧ (생략) 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 공무원.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u>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u> 직렬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외의 특정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2. ~ 5. (생략) ⑩ · ⑪ (생략) 제218조의33(국외선거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u>형사소송법</u>」 제200조, 제22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출석한 이 법의 위	-----. ⑪ ~ ⑮ (현행과 같음)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1. ----- ----- -----. ----- -----<u>형사법무</u>----- ----- ----- -----. 2. ~ 5. (현행과 같음)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33(국외선거법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① ----- -----「<u>형사소송법</u>」 제200조, 제221조, 제245조의13-----
--	---

반행위와 관련된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상대로 인터
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진술
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무부 및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조사
할 사건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진술을 들을 때에는 영사
가 참여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 1항에 따라 진술을 들을 경우 그 진술 내용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영상 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작성한 조서를 재외공관에 전송하고, 영사는 이를 출력하여 진술자에게 열람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진술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1조, 제242조,

-----의견

또는 진술-----.

② -----의견 또는 진술

-----의견 또는 진술-----

-----.

③ 사법경찰관

④ 사법경찰관-----

-----.

⑤ ----- 사법경찰관
의 진술 청취 -----

제243조의2부터 제245조까지를 <u>준용한다.</u>	----- <u>준용하고, 검사의 의견 청취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45조의13을 준용한다.</u>
⑥ 영사는 완성된 조서를 외교 부 및 법무부를 경유하여 <u>검사</u> <u>또는 사법경찰관</u> 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⑥ ----- ----- <u>사법</u> <u>경찰관</u>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 라 작성된 조서는 국내에서 <u>검</u> <u>사 또는 사법경찰관</u> 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⑦ ----- ----- <u>사</u> <u>법경찰관</u> ----- -----.
제223조(당선소송) ① ~ ③ (생 략)	제223조(당선소송)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 · 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u>관할</u> <u>고등검찰청검사장</u> 을 피고로 한 다.	④----- ----- ----- ----- ----- ----- ----- ----- ----- ----- ----- <u>관할</u> <u>광역공소청장</u> ----- -----.